

## 의료보험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 - 재활 및 물리치료 -

자료정리 / 취재부장 이정근

| 항 목  |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 관련근거   |
|--|--|--|
| 제 7 장                                      |  |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5.9.5)  |
| ◦ 산정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lectric acupuncture는 의료보험으로 급여하지 아니한다.</li> <li>2종 이상의 물리치료를 할 시에는 상병명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항목의 치료를 하여야 하나, 2종 이상의 치료항목 중 동일 치료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중복하여 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승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심사시에는 종류별, 시술 시간 등을 합산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하기 바라며, 물리치료를 청구할 시 진료의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급여 기간까지 시술이 가능함.</li> <li>추간판 연골 탈구증 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일 전기요법, 열기요법, 맷사지, 약욕 등 4종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시술을 하여야 하며, 약욕의 산정은 문제점이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li> <li>Balkan flane의 장착에 대한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li> </ul> <p>재활 의학 분야는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법 제 5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진료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요양 취급기관이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진료 능력을 갖추고 치료를 할 경우에 해당 항목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br/>     “모든 진료 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진료수가 기준액표의 매 분류 행위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주’를 부가할 필요성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추 결핵에 결핵 약을 투여하면서 시행된 물리치료, 사-1 hot pack, 사6 ultrasound, 사14가 TENS, 사15가 운동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li> <li>오십견에 hot pack은 시행하기도 한다.<br/>         Cold pack refrigeration unit에 의한 냉습포 시행은 사1에 준용 인정한다.</li> <li>사3 적외선 치료는 동일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이므로 한가지만 산정한다.</li> <li>동일 환자에게 각각 다른 상병으로 다른 부위에 hot pack과 infra red ray를 동시에 실시시 1종만 인정된다.</li> </ul> | 보사부 급여 1492-6264 호(80.5.17)<br><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5.1.23)<br>보사부 급여 1492-14118 호(81.9.5) |
| 〈치료료〉                                      |  |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5.9.3)  |
| ◦ 표재열치료<br>(온습포)<br>(Superficial heat) 사-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재열치료<br/>(온습포)<br/>(Superficial heat) 사-1</li> </ul>   |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2.6.29)<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1.12.8)   |

| 항 목                                |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 관련근거   |
|------------------------------------|--|--|
| • 심부 온열치료<br>(Diathermy)<br>사 - 2  | <p>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수가 기준액표 제 7 장에 분류할 재활 및 물리치료 산정지침중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 환자에 대하여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li> <li>사 6 초음파 치료와 동시 산정시 동일 효과를 나타내는 처치이므로 1종만 인정한다.</li> <li>주 2 ; 동일 효능의 wave는 1일에 여러 종류를 할 필요가 없다.</li> <li>Furunculosis 에 인정 한다.</li> </ul>  | 보사부 급여 1492-33495 호(84.11.27)  |
| • 적외선 치료<br>사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과 ·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 요법을 시술하였을 경우는 사 3 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li> <li>백반증, 건선, 장미색 비강진, 아토피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지루성피부염, 소양증 세균감염, 완선에 인정한다.</li> <li>원형 탈모증에 주 2회 정도 인정한다.</li> <li>피부과 전문의원이 아닌 경우는 사 4 자외선 치료로 대치인정한다.</li> </ul>  | 피부과 분과위원회<br>(84.2.17)<br>수조 1460-2636 호<br>(79.2.27)                      |
| • 피부과 자외선 치료<br>사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Carbon arc lamp 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자외선 치료를 위하여 mercury-vapor arcs 를 이용한 quartz &amp; lamp 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적외선 치료기기로서는 carbon arc lamp 와 특수한 quartz tube 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li> <li>나) Carbon arc lamp 는 금속염의 심(core)에 따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시켜 환자의 체표면에 조사시킴으로서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 요법임. 따라서 carbon arc lamp 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한 경우에는 “사 3 ”의 소정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람. 동치료 시 연소시는 탄소봉 재료대는 “사 3 ” 또는 “사 5 ”의 소정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임.</li> </ul> | 피부과 분과위원회<br>(84.5.4)<br>보사부 급여 31510-66113 호(85.8.3)                      |
| • 초음파 치료<br>사 - 6<br>(ultra sou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D test 를 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사 5 의 소정 금액을 산정함.</li> <li>골절직후 사 6 초음파치료는 하지 않는다.</li> <li>말초신경 변성에 초음파 치료와 전기자극 치료는 적응증이 되지 아니한다.</li> </ul>   | 보사부 급여 1492-6736 호(84.5.16)<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3.5.3)<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2.12.3) |

| 항 목                      |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 관련근거  |
|--------------------------|---|---|
| ○ 증기욕사-7<br>(steam ba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기의 아동에게 관절 부위에 초음파 치료는 골단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한다.</li> <li>심장부위 안면 부위에는 초음파 치료는 원칙적으로 적응증이 되지 아니한다.</li> <li>골수염에 인정하지 아니한다.</li> </ul><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음파치료 또는 적외선 치료시 사용되는 안티풀라민 약제는 인정하며 mineral oil, olive oil은 인정하지 아니함. (85년 4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li> <li>서로 다른 부위에 초음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부위 및 치료회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여야 함.</li> <li>다발성 관절염, spinal spasm, 등통이 있을시 시행 한다.(기구가 고가이므로 청구시 P.T 현황을 알아본다)</li> </ul> |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3.5.3)<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2.10.6)<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2.6.29)<br>보사부 급여 31510-38828호(85.3.21) |
|                          |   | 보사부 급여 1492-39571호(82.4.15)<br>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85.6.7)  |

&lt;다음호에 계속&gt;



## 부 제

김 수 민

제기랄 십오분도 채 안되어 빼 가다니 '  
하얀 까운의 얼굴을 향해 잠시동안의 눈총을  
쏠았으나, 되받아치는 시선에 기가죽어 이내 고  
개를 멀구어야 했다. 내가 지금껏(물리치료실에  
온 이후로) 한 마디 말도 뱉을 수 없었던 것은,  
대뇌의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어서가 아니었  
다. 치료실 전체를 싸고있는 냉한 중압감, 흰 까  
운의 반짝거림에 비해 윤곽조차도 불투명한 시  
커먼 얼굴들 때문인 것이다.

Hot pack이 걸려진 발목을 만지작거리는데  
그는 -까운의 사내- 어느틈에 왔는지 큰 키로  
내려다 보고있다. 손 → '으악' 내 손의 세 배  
는 되겠다. 발목을 주지 않으려고 꿈꿔 대었으나  
기어코 그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그는 점점 내  
발목에 강도를 더하면서 굳어진 관절을 펴려하  
고 있다. 기부스를 푼지 얼마 되었다고, 아무래  
"사람살려요!"

돌아본 그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흐릿한 얼굴  
에 유난히 입가에 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선생님 치료시간 되었읍니다."  
눈을 떠보니 박선생이 곁에 와 있다. 점심시간이

도 붙여놓은 뼈를 다시 부수려나 보다 '악 사람  
살려요' 말은 나오질 않았지만 두 손이 해엄을  
치듯 발광을 한다. 다행히 누군가 다가온다.  
여자인듯 까운에 맵시가 흐른다. 얼른 그녀의 팔  
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내 팔을 붙드  
는 것이었다. 무기력에 의한 체념으로 이빨을 꽉  
물고 견디기 십분, 그가 내 발목을 놓아주었을  
때는 다리 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어려웠  
다. 몇번 헉헉거리다가 긴 한숨을 토했기 무섭게  
그는 전기기구를 부위에 대고 있었다. 이제는 아  
예 몸뚱아리 전부를 그에게 맡겨버렸다.

'맘대로 해봐라 나도 악만 남았어'  
그가 재빨리 기계를 조작한다. 순간 갑자기 벼  
락이 떨어진듯 전기가 몸 구석 구석을 쥐어짠다.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러다 겨우 터져나  
온 일말의 비명.

끌난 것이다.

"꿈을 꾸신 모양이죠? 잠꼬대까지 하시고"  
"잠꼬대?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여느때처럼 내 입  
가에는 까만 점이 붙어있었다.